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미사용 공항시설 사용료 반환청구권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화 등 >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44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2202744)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대행 근거 상향입법 등(안 제32조제1항)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취지	4
2) 여객공항사용료 외의 공항사용료 등의 경우	6
3) 사용료 징수 대행 주체	7
4) 체계·자구 수정사항	9
다. 국토교통부 의견	10
2.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반환청구권, 그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 귀속 등(안 제32조의2 신설, 제5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11
가. 개정안의 내용	11
나. 검토의견	14
1) 개정안의 취지	14
2) 소멸시효 완성 전 사전 통지	16
3) 소멸시효 기간(5년)의 적정성(안 제32조의2제2항)	17
4) 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귀속 및	
강제징수(안 제32조의2제2항 및 제4항)	21

①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 귀속의 타당성	21
②교특회계법 개정 전제	23
③강제징수	23
5) 자료 요청 등의 근거 마련 및 과태료 신설	24
6) 부칙	25
다. 관계기관 의견	26
1) 국토교통부	26
2) 공정거래위원회	28
3) 국적항공사	28
4)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30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220274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12.
3. 회 부 일 : 2024.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항공운임 및 사용료 일괄부과를 위하여 항공권판매자가 사용료 징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용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위와 같은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가 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 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받

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위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대행 근거 상향입법 등(안 제32조 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를 사용 또는 이용 전에 이용예정자로부터 미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공항시설법 시행규칙」¹⁾에 규정된 사용료의 징수 대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u>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u> 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 ----- ----- <u>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u> ----- ----- <u>. 이 경우 사용</u> <u>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항공권을</u> <u>판매하는 자로서 「항공사업법」 제</u> <u>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u>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항공권판매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공항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사용료에는 여객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여객공항사용료²⁾’가 포함되어 있음.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사용료의 종류

라. 여객공항사용료

【 여객공항사용료 】

구분	국제선		국내선
	출발여객	환승여객	
인천	1.7만원/인	1만원/인	0.5만원/인
김포	1.7만원/인	1만원/인	0.4만원/인
기타	1.2만원/인	1만원/인	

자료 : 국토교통부

이러한 여객공항사용료의 징수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대행할 수 있고,³⁾ 「항공사업법 시행령」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⁴⁾, 현재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가격에 여객공항사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음.

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이에 안 제32조제1항은 기존에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여객공항사용료가 공항 등의 이용 전에 징수되는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안 제32조의2제1항에서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예정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 여객공항사용료 외의 공항사용료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공항사용료 외의 공항·비행장사용료 및 항행안전시설사용료는 사용·이용 전에 미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용 후에 징수하거나 사용·이용 즉시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사용·이용 전에 미리 징수하여야만 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난 9월 2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여객공항사용료 외의 공항시설사용료를 고려하여 “공항시설을 사용하

거나 이용하는 자(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항공권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에는 현재 항공권을 판매하는 자가 징수를 대행하는 여객공항 사용료 외에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착륙료·조명료·주차장 사용료 등 여객공항사용료 외 공항사용료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수대행자를 “항공권을 판매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사용료의 종류

가. 착륙료

나. 조명료

다. 정류료

라. 여객공항사용료

마. 촬영 및 광고료

바. 토지, 건물, 상업시설 등 사용료

사. 주차장 사용료

아. 계류장 사용료

자. 그 밖의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서 공항운영자가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

3) 사용료 징수 대행 주체

현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5)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여객공항사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징수대행 수수료를 약 2.5~5% 지급하고 있음.

【 공항공사별 여객공항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요율* 현황 】

구분	국제선	국내선
인천공항공사	5.0%	2.5%
한국공항공사	4.5%	3.2%

* 징수대행 최초시행 시점('04년경)에서 공사-항공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 현재까지 유지
자료 : 국토교통부

안 제32조제1항 후단은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사용료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임.

다만, 현재 「항공사업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즉 소위 ‘외국 국적 항공사(이하 “외항사”라 함)’의 경우에도 징수대행자로 기능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징수대행자로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적항공사)만을 예시로 들고 있음.⁶⁾

5)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 안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항공권을 판매하는 자로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항공권판매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수대행자는 사전 통지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인데, 외항사의 경우 국제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외교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외항사의 의견 수렴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항사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외항사에 대한 적용이 곤란한 경우 외항사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개정안 통과 이후 외항사를 징수대행자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외항사를 대통령령에 규정하여야 할 것임.

4) 체계 · 자구 수정사항

한편, 법 제32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에서 비롯한 것임을 고려할 때 안 제32조의 개정에 맞추어 제26조제1항에 대해서도 개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7)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입법사례,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국적사, 외항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다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환불가능기한을 1년으로 두고 있는 업계 표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행정적 부담 등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임.

「공항시설법」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공항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 국토교통부 의견

공항시설 사용료의 징수 대상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개정해, 공항시설 사용료 중 하나인 여객공항사용료가 이용예정자로부터 징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나, 공항시설 사용료 중에는 여객공항사용료 외에도 즉납, 후불 납부하는 사용료(착류료, 정류도 등)도 있어 이를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는바,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로 개정함으로써 사전·사후 납부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용료 징수 업무를 항공권판매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하위법령(시행규칙)에서 개정할 사안으로 법률에서 개정이 불필요하고, 동법 제32조 이외에도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에서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로 개정이 필요함.

2.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반환청구권, 그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 귀속 등(안 제32조의2 신설, 제5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안 제32조의2는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반환청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반환청구권의 존재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안 제69조제1항제2호의2는 안 제32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안 제55조제1항은 사용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제출 명령 및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사용료의 반환청구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예정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제32

현 행	개 정 안
	<u>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항공권판매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서 같다)에게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은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예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이하 “공항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된다.</u> <u>③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해당 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u> <u>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용료를 공항계정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u>항공관련업</u> <u>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u>	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출입·검사 등) ① ----- ----- -----<u>항공관련</u> <u>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u>

현행	개정안
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설> 3. ~ 6. (생략) ② · ③ (생략)	등 또는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u>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권판매자</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과태료)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u>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해당 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u>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예정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미반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10년 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사용료(이하 “미반환 사용료”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미반환 사용료를 징수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했던 자에게 반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권 가격에 여객공항사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음에 따라 비행기를 놓치는 등 공항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운임이 아닌 여객공항사용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지나쳐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5년간 169억원 이상의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항공사별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2020~2024.8.) 】

(단위 : 백만원)

계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로케이
16,976	4,550 (추정치)	3,467 (추정치)	2,114	1,266	1,392	3,349	334	369	135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는 자료 미제출로 개략적으로 추정한 수치임.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지난 2023년 우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환불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개정안은 여객공항사용료와 관련하여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사전통지를 할 것을 규정하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는 경우 환급가능한 요금은 여객공항사용료 외에 국제질병퇴치기금(1,000원), 출국납부금(7,000원)이 존재하며, 개정안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여객공항사용료 등 미환급금 중 여객공항사용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 및 출국납부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범부처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여 제도

상·행정상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임⁸⁾.

한편, 2024년 우리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서는 여객공항사용료를 자동적으로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2) 소멸시효 완성 전 사전 통지

안 제32조의2제3항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항공권판매자가 사용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권판매자)로 하여금 소멸시효 완성 전에 사용료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제로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항공권판매자로 하여금 사용료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안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미통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8) 참고로 지난 9월 정부는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항공기 미탑승 승객의 여객공항사용료 및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권을 명시하고, 소멸시효를 규정하며, 소멸시효 완성 전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귀속시키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한편, 지난 7월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였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멸시효 완성 전 사용자에게 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통지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 통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소비자가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소멸시효 기간(5년)의 적정성(안 제32조의2제2항)

현재 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미비하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⁹⁾에서 마련한 규정에서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약관상 항공권의 환불가능기한을 1년으로 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별로 2~3개월 연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여객공항사용료의 환불가능 기한도 약 1년임.

9)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가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외에 각국 항공기업의 대표자들이 국제항공의 단체를 조직하여 상업항공의 권익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45년 4월 쿠바 하바나(Havana)에서 세계 32개국의 61개 항공사가 세계항공사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대전 후의 항공수송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처하고 국제항공수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회사간의 협조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순수한 민간의 국제협력단체로써 항공운임의 결정, 운송규칙의 제정 등이 주된 임무이며 준공공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출처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https://www.airportal.go.kr/knowledge/network/LdAirportDetail.jsp?ID=404>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약관 중 항공권의 유효기간 】

RESOLUTION 735	
PERIOD OF VALIDITY	
PSC(42)735	Expiry: Indefinite Type: B
RESOLVED that,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the applicable fare rules:	
1. The period of validity for tickets issued at one way, round or circle trip fares shall be one year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ravel, or, if the first flight coupon is open-dated, and/or unused from the date of issue thereof.	
○ 항공권 유효기간 관련 : Resolution 735 (Period of Validity)	
1.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 개시일로부터 1년	

자료 : 국토교통부

【 국적항공사 항공권 유효기간 】

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국제여객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자료 : 항공협회

안 제32조의2제2항은 이러한 환불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관점에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면서, 단기소멸시효 기간(1년·3년)을 규정하고 있고, 「상법」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멸시효 】

채권의 종류 (근거규정)	소멸시효 기간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일당제, 기타 임시직 노무)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하 민법 제164조) ⑤ 보험료의 청구권 (상법 제662조)	1년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상법 제662조)	3년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예, 리스계약 사용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채권 및 직무에 관한 채권 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⑥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공증한 어음 채권, 상속회복청구권 (10년 규정별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10년 규정별도)	3년
상사채권(상법 제64조), 국민연금 급여청구권, 세금 등 과오납금반환청구권	5년
① 보통채권(민법 제162조 제1항) ②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권리(민법 제165조 제1,2,3항) ③登記청구권(단, 점유하는 경우 시효없음)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년
기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용익물권, 지적재산권, 채권적 성질의 가족법상 재산권 등)	20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항변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	본래의 채권시효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7&contentId=030>)

각 개별 법률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할 때에는 「민법」, 「상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 기간 규정을 참고하되, 진정

한 권리관계의 회복 필요성과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정하여야 함¹⁰⁾.

사용료 반환청구권의 경우 그 성격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전을 납부하였다는 점에서는 과오납금반환청구권¹¹⁾과, ‘공항 사용’이라는 서비스라는 대가를 위하여 납부하였으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한 반환청구권이라는 점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국세기본법」 또는 「상법」에서 양자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¹²⁾하고 있는 점과 현재와 같이 관행에 따라 사실상 소멸시효로 기능하고 있는 1년의 환불가능 기한은 항공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소멸시효 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항공 소비자의 보호라

10) 「법제이론과 실제」(2019), 국회 법제실, p.589

1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는 측면과 동시에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미반환 여객공항사용료를 관리하여야 하는 행정적 부담, 국제적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는 점과 여러 규정 상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하여 비교형량을 통해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귀속 및 강제징수(안 제32조의2제2항 및 제4항)

①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 귀속의 타당성

안 제32조의2제2항은 공항 등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5년의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반환되지 않은 사용료를 교통시설 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객공항사용료는 국민들이 지불한 돈으로, 국민이 공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 전 사전 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소비자가 공항을 실제로 이용했다면 여객공항사용료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즉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되었을 것이고, 특히 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경우

「한국공항공사법」¹³⁾에 한국공항공사의 수입으로 함을 명시되어 있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용료를 공항공사에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실제로 공항이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공항공사의 수입으로 보는 것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국고,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으로 귀속시켜 공항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소비자가 잊고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환이 청구되지 않은 미사용 여객공항사용료를 일종의 유실물과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유실물법」¹⁴⁾은 유실물 소유권자가 유실물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법」¹⁵⁾을 함께 개정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한국공항공사법」

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14) 「유실물법」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15) 「한국공항공사법」

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②교통회계법 개정 전제

안 제32조의2제2항은 공항 등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반환되지 않은 사용료를 교통시설 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항·비행장·항행 안전시설 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규정하는 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745호)¹⁶⁾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③강제징수

안 제32조의2제4항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항공권판매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용료를 공항계정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세 징수절차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①납세고지를 하고,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면 ②독촉을 하며, 독촉을 받

1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745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2. ~ 10. (생략) ②·③ (생략)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공항시설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항·비행장·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2.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고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③압류를 하고 압류된 재산을 강제로 ④매각하여 납부할 세액에 ⑤충당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용료는 안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국세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임.

5) 자료 요청 등의 근거 마련 및 과태료 신설

안 제55조제1항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료 반환실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항공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 제32조의2에서 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 귀속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고 귀속 시 사용료 관련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69조제1항제2호의2는 미사용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사전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자나 사용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권판매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보임.

6) 부칙

안 부칙 제1조는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32조의2제3항¹⁷⁾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부령의 개정이 요구되고, 법 제69조제6항¹⁸⁾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9조제1항제2호의2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이 요구되므로 하위법률 개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 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10년 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사용료에 대해서 이를 징수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사용료의 징수를 대행한 항공권판매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했던 자에게 반환하도록 노력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객공항사용료는 국민들이 지불한 돈으로, 원칙적으로는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그 반환을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7) 안 제32조의2(사용료의 반환청구 등) ③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해당 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8) 「공항시설법」

제69조(과태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안 부칙 제3조와 같이 노력 의무를 부칙에서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국토교통부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항공사 등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함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항공사가 개략적으로 추산한 결과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0년간 226억원의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가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 항공사별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 추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대한 항공	아시 아나	제주 항공	에어 부산	이스타*	진에어	기타**
공항 이용료	22,631	9,100 (추정치)	6,933 (추정치)	1,197	864	미제출	1,201	3,336

* (이스타 항공) '20년 회계시스템 쉼다운 및 법원 회생절차 등으로 데이터 구분 불가

** 티웨이, 에어서울, 에어로케이 등 여객운송면허 항공사(화물운송면허 항공사 해당 X)

자료 : 국토교통부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반환 청구권(소멸시효 5년) 부여, 시효 경과 시 국고귀속 등 미사용 공항사용료가 국민에게 반환되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나, 법

개정의 취지는 미사용 여객공항사용료가 다시 국민에게 반환(시효 소멸 시 국고귀속)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이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항공사가 납부하는 착륙료 등 의도하지 않은 사용료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해지는바, 법 개정의 목적에 맞게 반환청구 대상 사용료를 ‘여객공항사용료’로 한정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전통지 주체를 ‘공항운영자’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55조제1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사가 징수대행한 여객공항사용료를 항공권 미사용객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등 의무가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여객공항사용료의 ‘징수권자(공항운영자) - 징수대행자(항공사)’ 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안 제55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시행을 위하여 특정 대상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동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다음, 안 부칙 제1조 개정법률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동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이 요구되므로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ex. 6개월)만큼 유예가 필요하며, 안 부칙 제3조 미반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부칙에 시행일, 유효기간 외 부수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타

당한지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와는 별개로 부칙 개정안의 취지인 반환 권고 및 이행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승객에게 환급청구권 보유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 전 사용자에게 공항사용료의 반환 청구권이 있음을 통지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 통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국적항공사

환급청구권 도입 등 개정안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환급청구의 경우 국제적으로 유사사례가 없고 미환급금이 결국 국고로 귀속되므로 ‘승객 재산권 보호’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권 유효기간 내 통지하여 알리는 것이 승객 혼선 최소화 및 재산권 보호 등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임.

또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5년) 부여 시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1년) 과차이 발생에 따라 승객 혼선 유발이 불가피하고, 항공사 징수대행 행

위는 공사-항공사 간 계약에 따른 행위로, 사인 간 계약에 따라 발생한 사항에 대한 국가의 개입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미사용 공항사용료의 소비자 환급을 위한 별도 인력 및 시스템 구축 개발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단순 징수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입법은 부당하고 소멸시효 기간 중 승객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항공사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우려됨.

또한, 항공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권 완료 항공권에 포함된 사용료를 징수 주체인 공항공사에 월 단위로 정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조항을 국적사만 적용할 경우 국적사-외항사 사용 승객 간 혼선 초래 및 승객 권익보호 문제 지속이 우려됨.

한편, 부칙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최근 5년 내 탑승객 정보에 한하여 보관 중으로 법 시행일 전 소급 기간을 1~5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먼저,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승객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전 세계 항공사와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통상 1년 이내에 환불을 허용하고 있는바, 여객공항사용료 환불에 대하여 5년이라는 긴 유효기간은 비현실적이고,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유효기간이 길어지면 항공사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간에 걸쳐 회계처리함에 있어 추가 비용 등을 유발하며, 구매일과 환불요청일 간 간격이 길어 환불해야 하는 결제수단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 사전통지 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중개업체가 개입할 수 있음에 따라 항공사는 그 기간 동안 승객의 최신 연락처 등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음.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후 국고 귀속과 관련하여 항공사는 미사용 여객공항사용료를 국고로 귀속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으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항공권 부채는 수익으로 처리되고 해당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5년 후 미사용 여객공항사용료가 국고로 귀속되면 항공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회

수함에 있어 법적·재정적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개정안은 실현가능성이 미흡하고, 업계가 개정안에 따른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준수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0